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9

발의연월일: 2024. 6. 21.

발 의 자: 한정애·장철민·복기왕

박희승 • 민홍철 • 민병덕

문진석 · 송옥주 · 이수진

이학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실험 후의 실험동물의 처리 등을 포함하여 실태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음.

하지만, 인간을 대신하여 실험에 활용된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로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분양·기증을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에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표시하도록 하여 동물실험 축소를 유인하는 한편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실험이 끝난 후에 해당 동물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분양 또는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실태보고서에 포함하 도록 하며,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에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표 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22조제2항제5호의2 및 제2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2(실험동물의 분양·기증) ①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동물실험의 종료나 중단 등의 사유로 실험동물을 사용하지아니하는 경우 해당 실험동물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분양 또는 기증 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기증 대상으로 결정한 실험동물을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험동물의 분양 및 기증 대상의 기준, 제2항에 따른 분양 및 기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의2. 제18조의2에 따른 실험동물 분양 및 기증에 관한 사항 제6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2(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의 표시) ①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실험으로 만들어진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약외품·생물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은 해당 제품의 포장이나 라벨 등에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 <u>신설></u>	제 정 안 제18조의2(실험동물의 분양·기증) ①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등는 관리자는 동물실험의 중 로나 중단 등의 사유로 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해당 실험동물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분양 또는 기증 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기증 대상으로 결정한실험동물을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등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단체에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험동물의 분양 및 기증 대상의 기준, 제2항에 따른 분양 및 기증의 절
제22조(도무시허 시대ㅂㄱ) ①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동물실험 실태보고) ① (생 략)	제22조(동물실험 실태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실태보고서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신 설>

6. ~ 8. (생 략) <신 설>

2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18조의2에 따른 실험동
 물 분양 및 기증에 관한 사항
 6. ~ 8.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의 표시) ①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실험으로 만들어진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료기기 약외품·생물의약품·의료기기 ·화장품은 해당 제품의 포장이나 라벨 등에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을 표시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